

# 군보

영광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24-78 2024. 11. 7.(목)

발행 : 영광군 / 편집 : 기획예산실 홍보팀  
(☎061-350-5742, FAX 061-350-5591)

## 공 고

영광군 공고 제2024-1151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2
영광군 공고 제2024-1153호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관련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3
영광군 공고 제2024-1155호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4
영광군 공고 제2024-1156호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9

##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영 광 군 수

### □ 교섭요구 노동조합

-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범기)
- 교섭 요구일자 : 2024. 11. 5.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24. 11. 7. ~ 11. 13.

###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24. 11. 13. 18: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제출처 : 영광군청 총무과 서무단체팀  
전남 영광군·읍 중앙로 203(영광군청 총무과) FAX 350-5592

###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 서무단체팀으로 문의 (☎ 350 -5723)하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관련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2024년 제4차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 영 광 군 수

- 2024년 제4차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 의 일: 2024. 8. 30.(금)
  - 참석위원: 9명
  - 의결방법: 위원회 위원 과반수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
  - 심의결과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2차 협의(안): 동의(승인)
  - 보완사항: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의견 반영 후 출연기관 설립 절차 추진
  - 결과통보: 전라남도 예산담당관-9962(2024. 9. 10.)호 및 동-12307(2024. 11. 5.)호
- 공고기간: 2024. 11. 7. ~ 11. 21.(15일간)
-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과 교육팀(061-350-4704)
- 붙 임
  - 가.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2차 협의 검토의견 1부.
  - 나. 검토의견 반영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계획서 1부. 끝.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2. 제정사유

-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및 지급대상(안 제5조 ~ 제6조)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4. 11. 7. ~ 11. 26.(20일간)

##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전화) 061-350-5456, FAX) 061-350-5465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팩스, 직접 방문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350-54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1. 조 례 안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조례

2. 의 견

관련조문

의 견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영광군민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영 광 군 수

1. 조 례 명: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영광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설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기금의 조성, 용도 및 관리 ·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 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 직무(안 제8조~제9조)
- 마.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의견 청취(안 제10조~제11조)
- 바.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4. 11. 7. ~ 11. 26.(20일간)

#### 6.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24. 11. 26일까지 (20일간)

○ 제출방법: 서면(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

○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영광군수(재무과 재산관리팀)

가. 주소: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재무과

나. 전화: 061-350-5763 / FAX: 061-350-5593

####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전화: 061-350-5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청사(영광군의회 청사를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청사건립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등 청사 건립 관련 부대비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영광군 지정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기금의 조성·운영·관리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업

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 임기 내에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

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업무담당팀장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